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4

책을 펴내며

소통과 공감을 향한 새로운 도전 김명실

6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6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 활동을 축하하며 이성규

8 법에서도 꽃이 피는 그런 세상을 발달장애인들이 만들다 임성택

10 발달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어요 박김영희

12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를... 김선규

14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로 차별을 말하다 조종란

16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사람들

16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알게 되었다 구재희

18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중요하다 김경훈

20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박경인

22 포기하지 말고 같이 배웁시다 장민원

24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황지원

26 경험에서 나온 말은 힘이 세다 최희정

28 제작위원들과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 이원무

30

더 쉽게 고치기 위해 애쓴 사람들

김난이, 신용철, 이소정, 조태환, 정승환

32

활동사진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38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말

46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1조~50조

114

부록

1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13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온 다른 법

우리 모두

소중해

## 소통과 공감을 향한 새로운 도전



김명실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장

지난 2012년 연구소는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서 「나, 여기 있어」를 출간하였고 3년 만에 다시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제작한 「우리 모두 소중한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책으로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소중한 활동을 지원해주신 한국장애인재단과 법무법인 지평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작보고회에 축사로 함께 해주신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영희 상임대표님, 나사렛대학교 김선규 교수님,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집행위원장이신 조종란 성민복지관 관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소가 발달장애인 분들과 함께 제작한 장애인권리협약서 「나, 여기 있어」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한」라는 결과물은 법에 명시된 권리를 쉽게 설명해 놓은 것과 더불어 이 책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발달장애인과 소통과 공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활동입니다.

지난 2014년 제정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발달장애인지원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발달장애인에게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는 모든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모든 권리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으로 보장하는 매우 낯설고 강력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 생소한 법을 지킨다는 것이 발달장애인은 물론이고 발달장애자녀를 둔 부모, 형제, 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관련 연구자 그리고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까지 포함하여 모두에게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 새로운 도전이 모두에게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루하거나 견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단순히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이 아니라 이 낯선 도전의 과정을 통해서 발달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감이 가능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힘으로 발휘할 것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개월 간 늦은 저녁시간 조문을 이해하고 쉽게 만드는 뜻 깊은 활동에 참여한 박경인, 구재희, 황지원, 김경훈, 장민원 씨, 김혜경 선생, 최희정 팀장, 이원무 선생, 그리고 감수를 해준 ‘멋진 친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활동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발달장애인과 소통과 공감을 위한 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옹호 활동을 축하하며



이성규  
한국장애인재단 이사장

하늘은 파랗게 맑지만 어느새 입동이 지나 옷매무새를 다시 만지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한국장애인재단 지원사업의 파트너 단체인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 「우리 모두 소중한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책을 제작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그들의 정서와 언어로 권리옹호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그 연장선상에서 발달장애인 스스로가 이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쉽게 바꾸어 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들이 장애를 이유로 침해와 차별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받고, 침해와 차별에 대응하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장애인재단에서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실현의 단초를 마련해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발표회 자리와 「우리 모두 소중한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발달장애인 당사자 자조모임의 한 분 한 분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감수를 맡아주신 발달장애인 극단 '멋진 친구들'과 이주연 변호사님, 그리고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가족들에게 감사와 함께 축하를 전합니다.

# 법에서도 꽃이 피는 그런 세상을 발달장애인들이 만들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공익위원장

법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몇 번 읽어도 선뜻 다가오지 않습니다. 한참 설명을 듣고 나서야 이해되고, 그 안에 복잡한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발달장애인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한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장애인을 ‘몸과 마음에 장애가 있어서, 생활하면서 지낼 때 편리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함께 있어서 쉽게 이해됩니다. 이 책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차별이 무엇인지, 장애인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 책은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만들었습니다. 당사자가 도움을 받아 어려운 법을 공부하고 풀이한 뒤 발달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을 낸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존재이며, 인간으로서 귀하고 존엄합니다. 누구도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비교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장애인들이 이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 나온 것은 정말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책은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법이 어려워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저학력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이 사람들과 가까워질 때, 법이 사람을 위한 법으로 드디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이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법에서도 꽃이 피는 그런 세상’이 이 책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발달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있어요

주민센터에 왔어요.  
 인감증명 한 장을 찾으려고 해요.  
 모두 바쁘다고 나를 보지를 않아요.  
 한 남자에게 가서 인감증명을 말하려는데, 남자는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 해요. ‘왜 왔느냐?’ ‘뭘 도와줄까?’ ‘이거냐? 저거냐?’ 등등  
 조금만 기다려 주면 내가 말 할 텐데...  
 안 기다려 줘요.

경찰서에 왔어요.  
 무서워요. 엄마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놀이를 했는데...  
 아줌마는 막 화를 내고 나를 혼내고... 난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런데 경찰이 와서... 난 경찰서에 왔어요.  
 무서운 경찰아저씨는 내 이름, 우리 집을 물어보고  
 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해서 다 줬어요.  
 경찰아저씨는 내가 핸드폰으로 아줌마를 찍었느냐고 해서 찍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할머니도 아이들도 아저씨들도 또 달리는 지하철도 찍었다고 했어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첫 번째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발달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왔을때,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행정절차에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주민센터 공무원은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사법절차에서 경찰에게 진술할 때는 발달장애인에게 쉬운  
 말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의사소통조력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발달장애인의 권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요구해야 합니다.

무척 반갑고 고맙습니다.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책으로 만들었다니 저의 마음이 설레고  
 기다려집니다. 무엇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말과 방법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 다시 만들었다니 더욱 반갑습니다.  
 발달장애인이 매 순간 일상에서 차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이 이 법을 많이 아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발달장애인들이 법을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자기 권리를 잘 알고 행동하는 당연한 발달장애인의  
 모습을 기대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 책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를 바라며...

발달장애인이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인 나사렛대학교의 재활자립학과에서 5년여간 가르치면서 늘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이들이 공부해야 하는 대학 교재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교양, 전공을 막론하고 온통 한자어로 되어있는 교재로 공부하는 발달장애인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가급적 쉬운 용어와 그림, 사진을 많이 넣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여름, 연구소에서 제작한 「나, 여기 있어 - 누구나 알기 쉽고 모두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책을 만나 이번 2학기 제자들에게 강의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용어와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은 교재 개발에 게을렀던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장애인들의 투쟁과 여망으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의 실제적 효력을 떠나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 특히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읽고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김선규  
나사렛대학교 재활자립학과 교수

제한·배제·분리·거부...' 이런 표현을 전문가가 아니고는 누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도처에서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받고 차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당사자주의가 아주 귀중한 의미로 자리잡은지 오래지만, 여전히 과잉보호와 편견 속에서 우리 발달장애인들의 당사자성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이들의 언어, 표현, 감수성으로 알 권리와 대응력, 인권감수성을 키워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듯이 모든 국민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들이 평등한 대우와 자격을 가지고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되기를 바란다.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에 이은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우리 발달장애인들에게만 쉬운 것이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애인의 인권에 쉽게 접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항상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변화를 위해 선도하는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김명실 이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낸다.

##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로 차별을 말하다

발달장애인의 당사자주의 구현을 위해 변함없이 한 길을 걸어가는 연구소의 활동과 열정에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누구보다 당사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는 연구소의 활동은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많은 기관에 귀감이 됩니다.

특히 이번 「우리 모두 소중해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작은 발달장애인들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재해석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그들의 정서를 담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5번이나 되는 짧지 않은 회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온전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에서 연구소의 신념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조종란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 집행위원장  
(성민복지관 관장)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고 배포하여 권리이행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마련하였기에 더욱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동대문구의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건립에서 발생하는 의견대립의 모습에서 '인식'이라는 환경의 벽을 다시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우리 모두 소중해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차별적인 사회의 인식에 새로운 해안으로 많은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저희 발달장애인권익지원연대도 그 걸음에 동행하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환경 모색에 희망찬 마음과 기대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로 이야기하다보니 알게 되었다

구재희



장애 배우 처음 배웠대?  
 예, 법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연기가 너무 밀고 버티고 계속 해야 하는 거  
 장애 배우는 점점 배우면서 바뀌나?  
 예, 서로 이야기 하다 보니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생각이 넓어졌어.  
 그리고 처음엔 형이라 불렀어. 그래서 러블리 재연이었어.  
 선생님이라 불러  
 다른 사람에게는 힘든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행했다.  
 왜 간혹 사다니는 연극을 하는 거지? 못 알아 들었는데 장애인 모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알게 된다.  
 장애인 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었다. 그래서 리얼 사건을 설명해줬어.  
 눈앞으로 많이 나서 놀랐어. 그리고 빛을 보며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그래서 나도 장애인  
 장차법을 배우고 난 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도 항상 배우면서 장애인 법  
 나도 ~~사건에 대한 조사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을 알아 갔어.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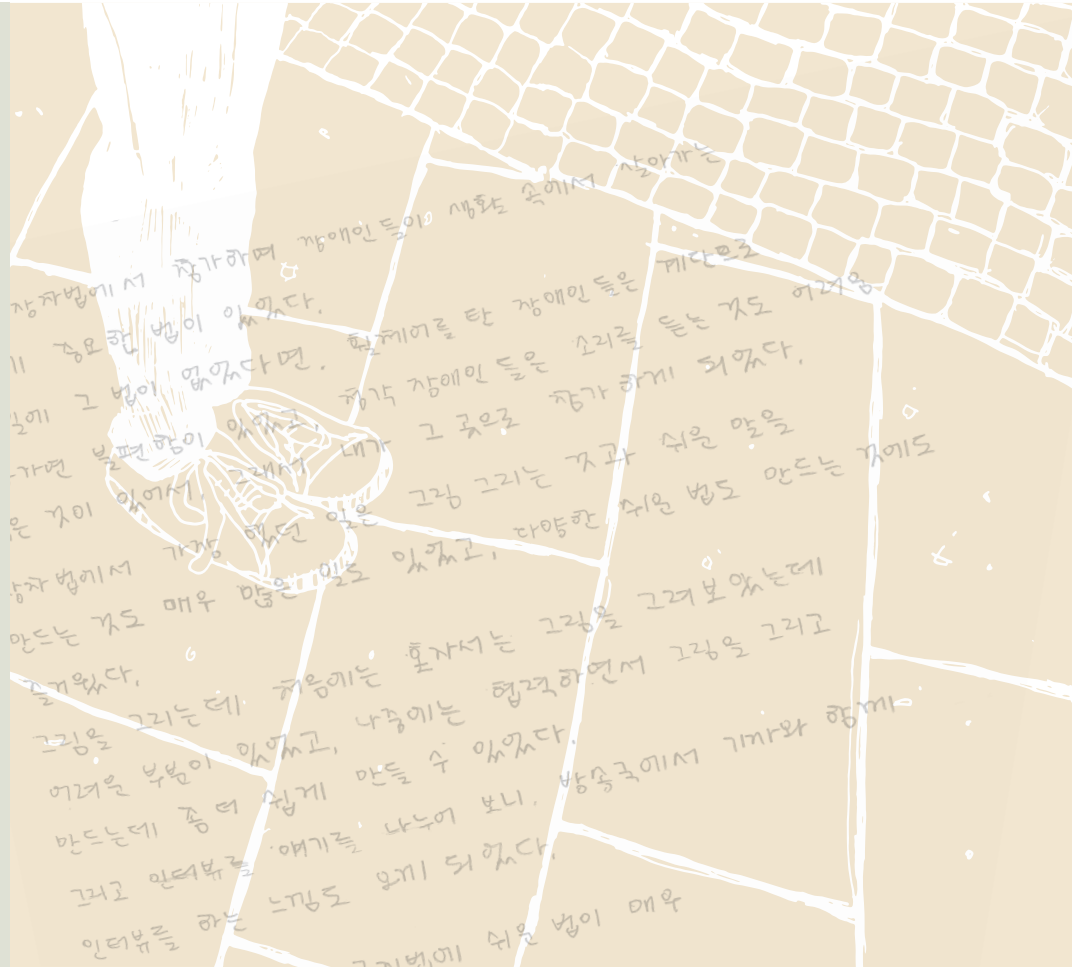
처음에 여기 온 것은 여자 친구가 같이 가자고 너무 졸라대서 왔어요. 장애인차별금지법 배우러 처음 올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가 귀찮았고, 회사 끝나고 연구소에 오기가 너무 멀어서 배가 고플 때도 있었어요. 솔직히 장차법 할 때 계속 앉아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점점 배우면서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니, 모르는 것을 알게 되어 생각이 넓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힘든 과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울컥했습니다. 또 같은 회사 다니는 민원누나의 말을 처음에는 못 알아 들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모임에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임을 같이 한 연구소의 남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고 형이라 부르라고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친해지고 싶었어요.

장차법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보조기구가 많아서 놀랐어요. 저는 휠체어랑 지팡이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오셔서 장애인 차별 사건들을 설명해줬을 때, 그 일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배웠더니 나도 차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중요한 그림이 필요하고 쉬운 법을 만드는 것이 좋았다. 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쉽게 만드는 모임을 참가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곳곳에 중요한 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만일에 그 법이 없었다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계단으로 올라가는 불편이 계속 생길 것 같아서, 모임에 참가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했던 일은 그림 그리는 것과 쉬운 말을 만드는 것 등 매우 많은 일이 있었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즐거웠다. 그림을 처음에는 혼자서 그리는 게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협력하면서 해서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기자와 인터뷰를 해보니, 꼭 방송국에서 기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는 느낌이 들어 좋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쉬운 법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중요하다

김경훈



# 내가 하고 싶은 거라서 심장이 두근두근했다

박경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배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법을 쉬운 말로 바꾸는데 이해하기 어려웠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같이 작업을 하는 팀과 함께 서로서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해하고 글을 완성했다.

처음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50조를 우리가 과연 다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불편한 경험들을 이렇게 뭉쳐서 해결하고, 쉽게 고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솔직히 중간에 하기 싫은 때도 있었다. 왜냐하면, 일하고 나서 저녁에 모임을 갖는 게 너무 힘들었다. 하지만 모여서 한 개씩 풀어나가는 과정을 하면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작업을 끝냈을 때 '우리가 해냈어!'라는 자신감이 많이 생겼고, 내가 다 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다. 정말 더하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면서, 나 스스로가 참 신기했다.

생활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생각들을 하게 되고, 참 나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심장이 두근두근했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좋았다. 앞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알리는 교육을 하고 싶다.

- 많은 장애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비장애인인 장애인과 장애인인 장애인 함께 불편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 조금 다르다고 해서 제한, 분리, 거부, 배제하면 안 됩니다.
- 우리가 살 수 있는 자원과 우리에게 맞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우리가 단순히 도움만 받는 것보다는 우리도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도움만 주는 것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하면서 차가운 세상에서 살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은 짐이 아니라 장애인들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누구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환경이 될 때까지 나는 이런 일을 계속하고 싶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작업을 통해 한걸음 더 발전하고 배워가는 것 같다.



## 포기하지 말고 같이 배웁시다

장민원

2013년 10월 「나, 여기 있어! - 누구나 알기 쉽고 누구나 함께 누리는 장애인권리협약」 책을 발표하고서 어떤 분이 저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쉽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언제 할지 모르지만 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년 후, 진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쉽게 만드는 자조모임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제가 바라는 것!

쉽게 알 수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책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첫 모임 때 사람들을 보았는데, 아는 사람들이 3명 있었고, 1명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소개도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배웠는데 모르는 단어와 뜻과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 참 진짜 힘들다’,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설명을 해줘도 어려워서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후...’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모두 설명을 해줘서 조금씩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좋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들 잘 설명을 해줘서 감사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어려운 단어와 뜻을 알게 되어 좋았고, 모르는 글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같이 배우면 좋겠습니다.

# 모든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으면 좋겠다

황지원



처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쉽게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차별로 인정되는 것이 참 많았다.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나도 역시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받았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생각과 걱정이 앞섰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서로가 겪은 일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도 이런 차별을 받았네!’, ‘차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진 차별에 속하는 거구나’라고 많은 공감이 됐다.

이 책을 만들면서 나부터 다른 장애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들 늦게까지 같이 있으면서 쉽게 바꾸는 작업을 해서 재미있었다. 이 책으로 인하여 다른 장애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차별 당하지 않고, 차별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경험에서 나온 말은 힘이 세다

최희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을 도우면서, 저는 어떤 말이 힘이 있는 말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재희, 김경훈, 박경인, 장민원, 황지원 씨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쉽게 바꾸면서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말’이란 살면서 직접 부딪혀서 느끼고 알게 된 것을 표현한 것이더군요. 내가 힘이 있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와 경험이 필요하고, 상대방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경청(잘 들어주는 것) 해야 한다는 것도 새삼 깨달았습니다.

꽃망울이 맺히던 4월 초부터 첫 눈이 온 12월 첫째 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공부했습니다. 세어보니 그동안 만난 횟수가 45번이나 되네요.

회사에서 일을 마치거나, 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늦은 저녁에 연구소에서 모였기 때문에 피곤해서 엎드리거나 즐기도 했었지요. 어떤 날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조항과 관련된 경험을,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하다가 밤 열 시가 되어서 허둥지둥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인 씨는 “이거 보다 더 쉬운 말을 없을까요?”라고 자주 물어보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쉽게 바꾼 말에 대해서 민원 씨가

“오케이! 알겠어”라고 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와!” 하고 환호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훈 씨가 정신적 장애를 “다른 사람의 특별한 마음을 잘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설명했을 때, 재희 씨가 “지원해야 한다는 말을 도와준다는 말로 바꾸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장애인을 도움 받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좀 어렵지만 보조한다는 말로 바꾸면 어때요? 대신 설명을 붙여요.”라고 했을 때도 우리는 모두 감탄했지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서 머리 속이 하얗게 됐을 때 지원 씨가 해 준 친절할 설명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멋진친구들’(김난이, 이소정, 조태환, 신용철, 정승환 씨)도 연극 연습과 공연 때문에 바쁜 시간 중에도 짬을 내주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바꾼 말들이 어려운 것은 없는지 다시 확인해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모두 고생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지난 8개월 동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는 울음이 터질 때도 있었고, 화가 나서 씩씩거리기도 했고, 가슴 한 칸이 부듯하기도 했습니다. 종이에 담을 수 없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은 이 책 한 글자 한 글자 뒤에 그림자로 새겨 놓겠습니다.

열심히 애썼지만,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서 더 쉽게 풀 수 없거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단어들이라서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에 소개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분명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 우리의 마음과 경험을 담아 나름대로 쉽게 풀어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 제작위원들과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들

이원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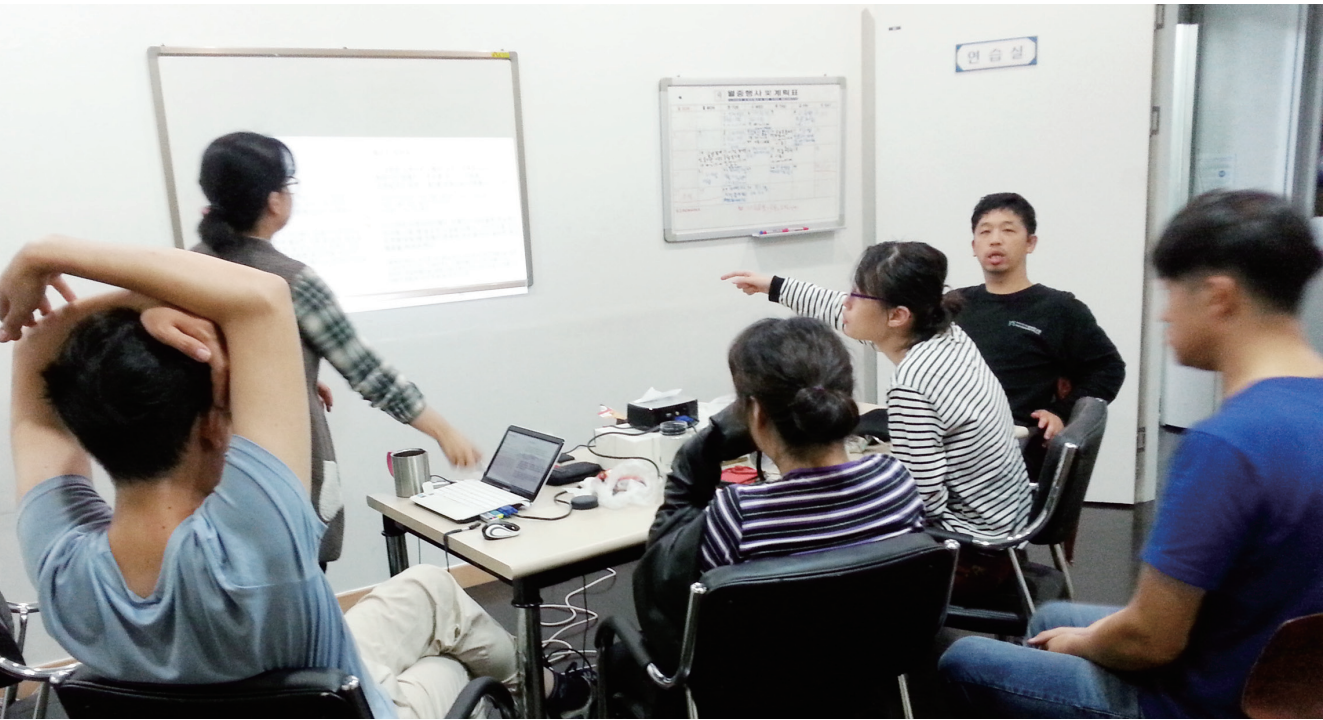
연구소에서 올해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작 사업을 하면서 나는 지원자로서 발달장애인 제작위원들이 결정하는 최종 조문들과 위원들의 의견을 작성하는 일을 담당했었다. 때로는 법 조문을 알기 쉽게 바꾸기도 했었다. 알기 쉬운 장애인권리협약 제작에 참여했던 적이 있던 나로서는 이 작업이 쉽지 않음을 경험했기에 최대한 제작위원들을 옆에서 지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흥분되기도 하였다.

제작위원들이 처음에는 조문을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을 쉽지 않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자신의 말로 이해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모습을 보며 정말 좋았다. 그리고 한 제작위원이 어떤 단어를 어려워하면 다른 동료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알기 쉽게 설명해

동료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모습은 감동적이었다. 그런 모습들은 장애가 심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에게 분명 희망의 빛으로 다가갈 것이라는 느낌이 들어 행복했다.

또한 제작위원들이 살아 온 경험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순간순간들이 나에게서는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잡게 될 것 같다.

제작위원들이 만들어낸 「우리 모두 소중한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책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차별에 당당하게 맞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말하고 책임을 다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소중한’라는 발표회의 제목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고 소중한 인간으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멋진 친구들

- 김난이 검수작업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 신용철 나는 검수작업 수업을 하니깐 제일 좋았습니다.
- 이소정 저는 검수작업이 재밌고, 좋았고요. 또 하게 되면 또 하고 싶어요.
- 조태환 제가 알기 쉽도록 바꾼 건 많이 하지 않았어도 같이 힘을 모아 동등하게 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모임 있으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 정승환 감사합니다. 희정 씨와 검수작업은 즐거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저는 검수작업이 재밌고, 좋았고요.. 또 하게 되면, 또 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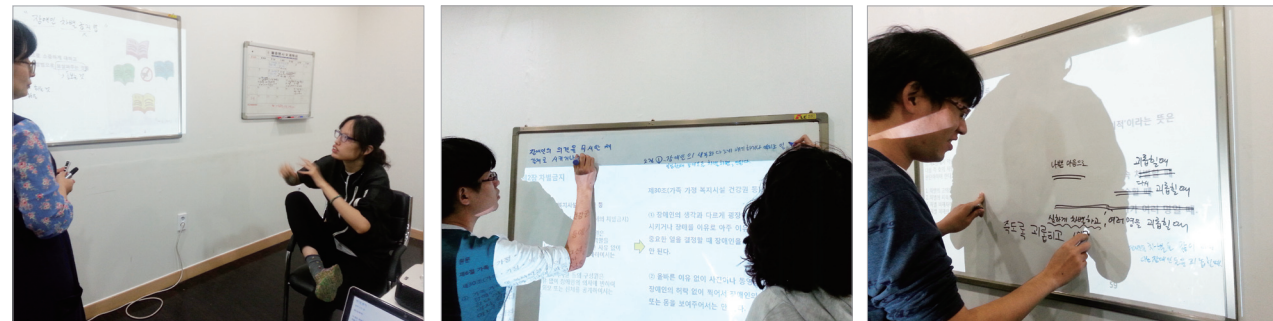
<멋진 친구들>

「저는 검수작업이 너무 어려웠지만 그래도 재미있었다」 난이

감사합니다. 희정 씨와 검수작업은 즐거웠습니다. 하고 싶습니니다. 이 정승환

제가 알기 쉽도록 바꾼 건 많이 하지 않았어도 같이 힘을 모아 동등하게 해서 좋았고 앞으로 모임 있으면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조태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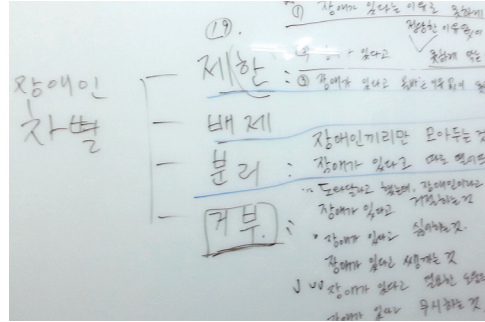
나는 검수작업 수업을 하니깐 제일 좋았습니다. (신용철)







제작위원으로 뽑혔으니,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알기 쉽도록 다시 만들어보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차별의 종류 4가지, 쉬운 말로 바꿔보자.



아이스크림 먹고 힘내보자, 아자!!



'과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야? 핸드폰으로 찾아보자.

## “우리 이렇게 활동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퇴근하고 나서 공부하러니 힘드네...



이 그림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사진 찍을 때는 역시 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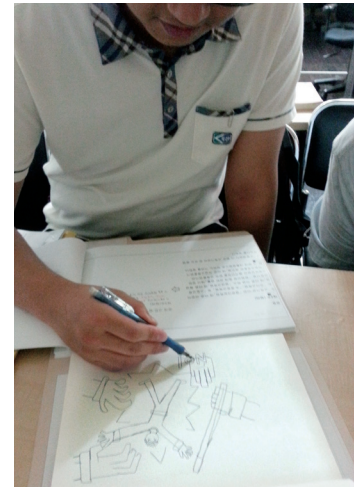
투표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맨 밑에 손을 그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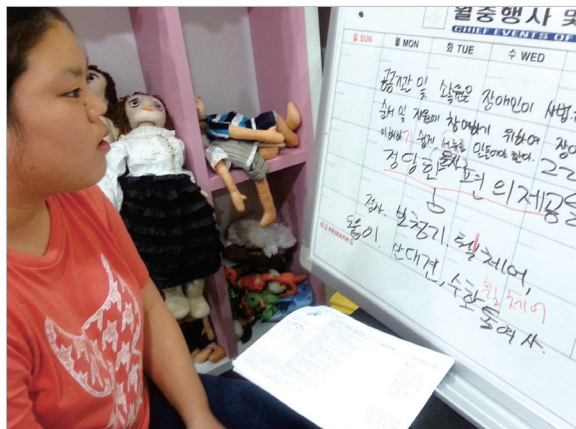
전자정보랑 비전자정보, 이렇게 그렸는데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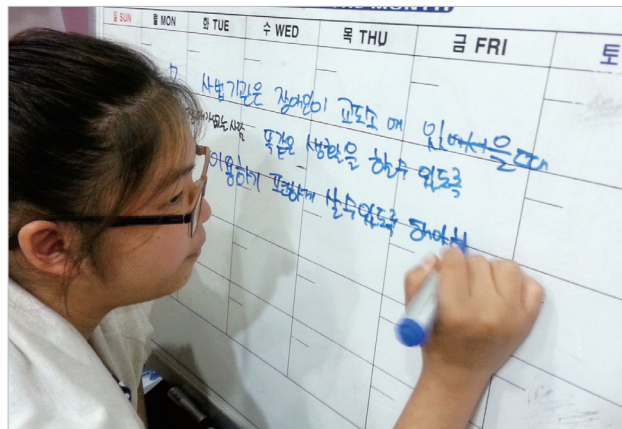
차별이 뭔지, 동영상도 보면서 공부하자.



폭력? 이렇게 그리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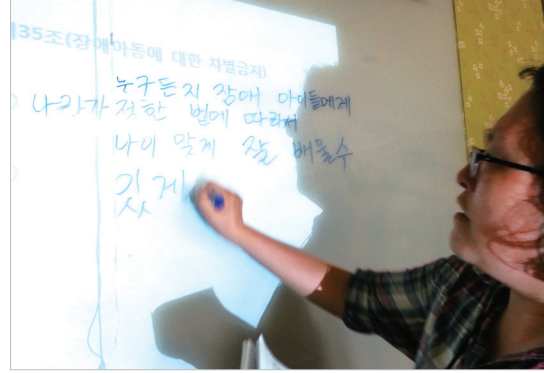
정당한 편의제공... 어렵네,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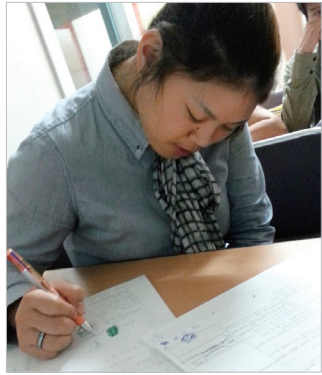
나는 '사법기관' 나올 때가 제일 재밌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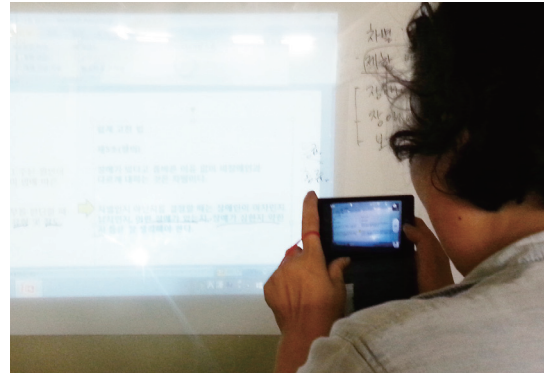
언니가 찾는 거 바로 여기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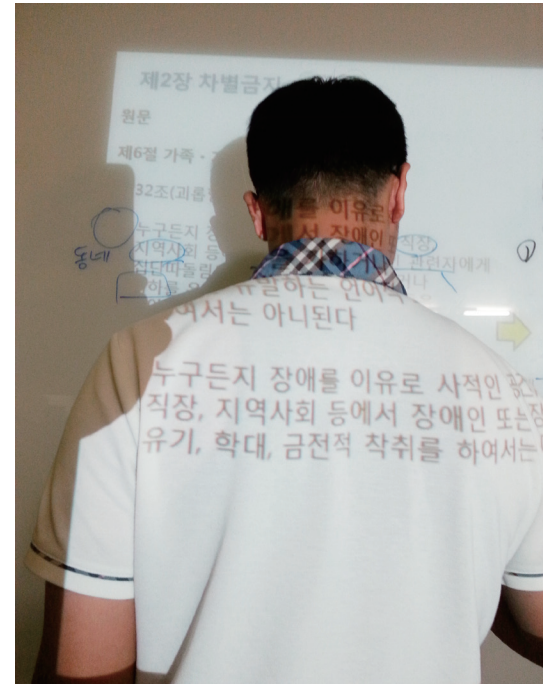
장애 아이도 어릴 때부터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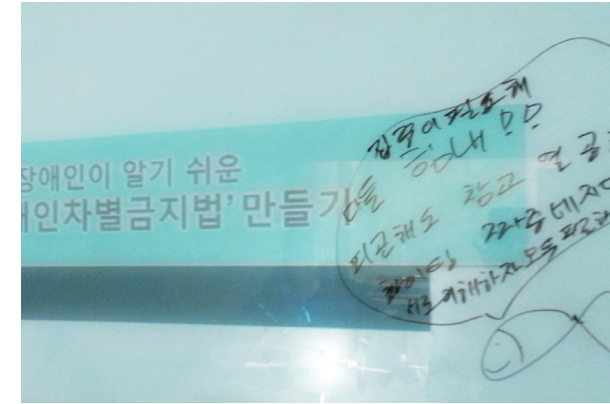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 자고 있는 걸까.



까먹지 않으려면 사진도 찍어야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이 새겨진 경훈 씨의 든든한 어깨



집중이 필요해, 다들 힘내!!



국가인권위원회 김원영 조사관에게 차별 사건을 직접 들으니까, 실감 나네.



각자 좋아하는 것을 들고 건배! 모두 수고했어요.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꼭 알아야 하는 말

여기에 나오는 말은 법 내용에 진하게 표시해두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을 받도록 만든 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6개의 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50개의 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 1장 총칙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많이 나오는 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2장 차별금지

①부터 ⑥까지에서 차별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차별을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① 일하는 것(고용)
- ② 배우는 것(교육)
- ③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받는 것(재화와 용역)
- ④ 경찰서, 법원, 시청, 주민센터 등에 가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투표를 하거나 나라에 어떤 일을 해달라고 하는 것(참정권)
- ⑤ 어머니 아버지가 될 권리(모·부성권), 성
- ⑥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할 권리(건강권)

#### 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장애가 있는 여성과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되며,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여성과 장애 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차별받은 장애인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 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장애인이 차별을 받아서 본 손해를 찾아내고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 6장 벌칙

장애인을 차별한 사람은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보조조건'의 뜻 (3조 2항)

보조조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안전하게 다니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개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장애인보조기구'의 뜻 (3조 3항)

장애인보조기구: 생활하는데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

- 예)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휠체어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청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팡이 등



휠체어



엘리베이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보청기



문자통역



수화통역



영상통화



자막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많이 나오는 장애인보조기구

### 1.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사람(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휠체어: 걷기가 힘든 사람이 앉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
- 엘리베이터
- 높낮이 조절용 책상: 책상을 쓸 사람의 키에 맞게 높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책상
- 보완대체의사소통 도구: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그림으로 생각을 전할 수 있도록 돕는 기계

### 2. 듣는 것이 불편한 사람(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보청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만들어 주는 기계
- 문자통역(속기): 말하는 내용을 컴퓨터로 쳐서 청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것
- 문자통역사: 문자통역을 하는 사람
- 수화: 손가락이나 팔을 움직여서 생각을 전달하는 것
- 수화통역: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것
- 수화통역사: 수화통역을 하는 사람
- 구화: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입술의 움직임이나 모양을 보고 흉내를 내어 말하는 것
- 영상통화: 전화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하는 것
- 음성통역사: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화를 쓰는 사람의 생각을 말로 전해주는 사람
- 자막: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에서 프로그램의 제목, 배우의 이름, 이야기의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글자로 보여주는 것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보조견



점자

확대독서기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점자정보단말기  
(무지점자단말기)

- 폐쇄자막: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글로 써서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데 폐쇄자막은 걸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계로 읽어야 한다.

### 3. 보는 것이 불편한 사람(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흰 지팡이: 시각장애인이 다치지 않고 다닐 수 있게 사용하는 지팡이
- 보조견: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안전하게 다니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개
- 점자: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서 읽을 수 있도록 글자 대신 두꺼운 종이에 점을 찍은 것
- 점자정보단말기(무지점자단말기): 시각장애인이 글을 읽을 수 있게 만든 기계
-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글자를 소리로 들을 수 있게 만든 것
- 확대독서기: 글자를 크게 보여주는 기계
-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컴퓨터 화면을 보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화면의 내용을 읽어주거나, 글자를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책, 잡지 등의 글자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소리로 읽어주는 기계



화면해설기

- 화면해설: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에 나오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  
화면해설의 예) 지금 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 여자주인공이 소리 없이 울고 있습니다. 그 때 남자 주인공이 방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남자주인공이 여자주인공 옆에 앉아서 말을 겁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지요. 저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자 여자 주인공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 화면해설기: 화면해설을 들을 수 있게 하는 기계
- 낭독자: 글자를 볼 수 없거나,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대신 읽어주는 사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공공기관’의 뜻 (3조 4항)

공공기관: 사람들이 내는 돈(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만든 곳  
예) 경찰서, 검찰청, 법원, 주민센터(동사무소), 구청, 시청, 소방서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괴롭힘’의 뜻 (3조 20항)

- 괴롭힘: 장애인에게 집단 따돌림, 방치, 유기, 금전적 착취, 학대를 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것
- 집단 따돌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왕따)
- 방치: 사람이 위험하거나 내버려두거나,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혼자 내버려두는 것
- 유기: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사람을 길에 버리는 것
- 금전적 착취: 돈을 빼앗거나,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 것, 일한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것



괴롭힘

- 학대: 때리거나, 욕하거나, 성폭력을 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행동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인데 무시 당하는 것  
예) 내가 싫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한 것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차별’의 뜻(4조 1항 1호~6호)

#### 차별

-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못하게 막거나, 따돌리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 장애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차별하는 것  
예)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글자로 된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것,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듣기 시험을 보게 하는 것
- 법으로 장애인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도, 장애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도와주지 않는 것
- 장애인을 잘못 알려주거나 나쁘게 알려주는 광고를 만드는 것
-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의 예) 가족, 친구, 선생님, 활동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등
- 장애인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 차별의 종류

- 제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
- 배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따돌리는 것
- 분리: 장애인만 따로 모이게 하거나, 장애인끼리만 살게 하는 것
- 거부: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장애인의 생각을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것



전동휠체어



보청기



경사로



화장실



버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뜻(4조 2항)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을 보조하는(도와주는) 사람이나 장애인한테 도움이 되게 만든 기계나 기구, 시설 등

예) 도와주는 사람: 활동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진솔조력인 등  
보조기구: 휠체어, 보청기 등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의 뜻 (4조 3항)

정당한 사유: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이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 때나 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일 때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것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악의적'의 뜻 (49조 2항)

악의적: 차별인 줄 알면서도 할 때  
차별을 멈추지 추지 않고 계속할 때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속 괴롭힐 때  
차별을 심하게 할 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피해자'의 뜻 (38조)

피해자: 차별을 당한 사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차별 행위자'의 뜻 (43조 2항)

차별 행위자: 차별을 한 사람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자주 나오는 말

- 차별: 서로 다르다고 괴롭히는 것
- 폭력: 욕을 하거나, 따돌리거나, 때리거나, 성폭력을 해서 마음과 몸을 아프게 하는 것
- 국가인권위원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
- 국가인권위원회법: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권리를 정해놓은 법
- 대통령령: 법에서 정한 약속을 진짜로 잘 지키도록 대통령이 정해서 명령한 것
- 지방자치단체: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등 내가 살고 있는 00시나 00도
- 법무부장관: 법에 관한 일을 하는 법무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
- 법원: 누가 잘못했는지를 법으로 밝혀내고 재판을 하는 곳
- 벌금: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
- 손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밀지는 것, 피해를 보는 것  
예)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손해가 크다.

# 우리 모두 소중하게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조 목적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살아가면서 차별받지 않고 소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었다.



차별: 서로 다르다고 괴롭히는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조 장애와 장애인

장애인이란 몸이나 마음에 장애가 있어서 살아가는데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불편: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조 정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오는 단어 뜻이 어려울 때는 1항부터 20항까지의 설명을 찾아보면 된다.

**1항** “광고”란 사람들이 물건이나 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을 말한다.

**광고의 예**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극장 등에서 볼 수 있는 광고

**2항** “보조견”이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길을 안전하게 다니고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개를 말한다.



장애인 보조견

장애인보조기구의 예



전동휠체어



보청기



장애인 자동차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3항** “장애인보조기구”란 생활하는데 불편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물건을 말한다.

**장애인보조기구의 예**

-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휠체어
-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청기
-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지팡이 등

**4항** “공공기관”이란 사람들이 내는 돈(세금)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하도록 만든 곳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예** 시청, 군청, 주민센터, 복지관, 보호작업장 등

**5항** “사용자”란 월급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사용자의 예** 회사의 사장, 카페의 점장, 식당의 주인, 직업재활시설의 원장 등

전자정보의 예



비전자정보의 예



개인정보의 예



**6항** “교육기관”이란 공부하고 배우는 곳을 말한다.

**교육기관의 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7항** “교육책임자”란 교장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 등을 말한다.

**8항** “정보”란 함은 가부터 다 목을 말한다.

가. 전자정보: 「국가정보화 기본법」<sup>1</sup>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전자정보의 예** 인터넷, 컴퓨터, 핸드폰, 전화 등으로 이용하고 찾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

나. 비전자정보: ‘전자정보’를 뺀 나머지 정보

**비전자정보의 예**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다. 개인정보: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

**개인정보의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정보:**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보관하기 위해 글씨나 소리, 영상 등으로 만든 모든 것

정보통신의 예



문화·예술활동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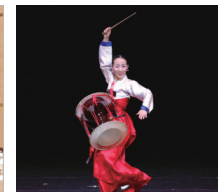
그림그리기



방송/영화



음악연주



춤

**9항** “정보통신”이란 정보를 보관하고 찾아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필요한 방법을 말한다.

**정보통신의 예**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 등

**10항** “문화·예술활동”이란 책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춤을 추는 것,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 사진을 찍는 것, 연예활동 하는 것 등을 말한다.

**11항** “문화·예술사업자”란 책을 만들고, 그림을 전시하고, 연극이나 영화를 찍어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활동 등을 직업으로 일하는 사람들 말한다.

**문화예술사업자의 예** 영화감독, 피디(PD), 연예기획사의 사장 등

체육의 예



달리기



줄넘기



수영



축구

**12항** “체육”이라 함은 놀이, 게임, 스포츠 등 몸으로 하는 활동을 말한다.

**체육의 예** 달리기, 줄넘기, 농구, 야구,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수영 등

**13항** “가정 및 가족”은 ㉠과 ㉡을 말한다.

㉠ **가족:** 법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을 말한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 **가정:**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말한다

**14항** “복지시설 등”이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보호작업장, 그룹홈, 생활시설 등을 말한다.

시설물의 예



아파트



창고



집



빌딩

이동 및 교통수단의 예



지하철



버스



도로

**15항** “시설물”이란 사람이 들어가서 살거나 일을 하거나 물건을 넣어두기 위하여 만든 곳을 말한다.

**시설물의 예** 아파트, 집, 창고, 빌딩

**16항** “이동 및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이나 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말한다.

**이동 및 교통수단의 예** 지하철, 자동차, 버스, 택시, 배, 비행기, 도로(길), 버스정류장, 공항 등



의료인

**17항** “건강권”이란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 누려야 할 권리를 말한다.

**18항** “의료인 등”이란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19항** “의료기관 등”이란 보건소, 병원, 약국 등을 말한다.

**20항** “괴롭힘 등”이란 ㉠부터 ㉣까지의 사건을 말한다.

- ㉠ 집단 따돌림: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것(왕따)
- ㉡ 방치: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혼자 내버려 두는 것
- ㉢ 유기: 안전하게 돌보아야 할 사람을 길에 버리는 것



괴롭힘

- ㉣ 금전적 착취: 돈을 빼앗거나,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 것 일한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것
- ㉤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자신의 성적인 행동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인데 무시당하는 것  
예) 내가 싫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한 것
- ㉥ 학대: 때리거나, 욕하거나, 성폭력 등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조 차별행위



배제



거부



분리

제한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은 1호부터 6호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 1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못하게 막거나, 따돌리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 2호. 장애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차별하는 것  
예) · 시각장애인 학생에게 글자로 된 시험지로  
시험을 보게 하는 것  
·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듣기 시험을 보게 하는 것
- 3호. 법으로 장애인을 도와주게 되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도와주지 않는 것
- 4호. 장애인을 잘못 알려주거나  
나쁘게 알려주는 광고를 만드는 것
- 5호.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의 예)  
가족, 친구, 선생님, 활동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등
- 6호. 장애인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2항** ‘정당한 편의제공’이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게 만든 기계나 기구, 시설 등을 말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

- 도와주는 사람: 활동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 진술조력인 등
- 보조기구: 휠체어, 보청기 등
- 편의시설: 엘리베이터, 경사로 등

**3항** 장애인 차별이지만, 아래의 1호부터 2호의 사건일 때는 ‘정당한 사유’이기 때문에 차별로 보지 않는다.

- 1호.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서 힘들 때
- 2호. 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4항** 다른 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고치려고 할 때에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5조 차별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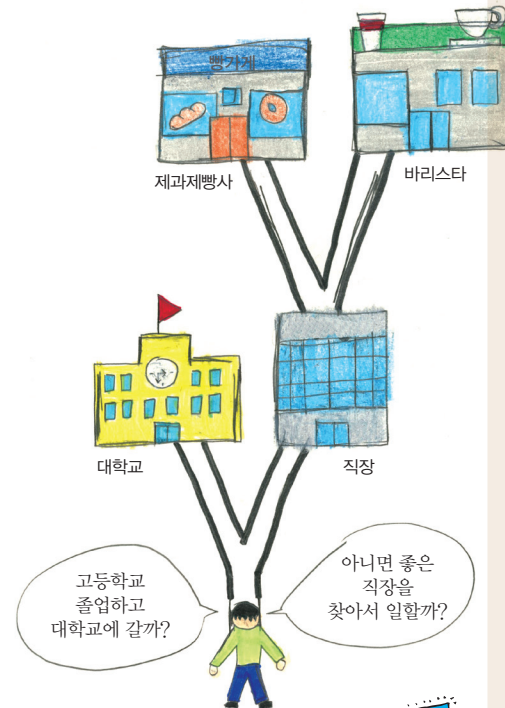
**1항** 장애가 있다고 이유 없이 비장애인과 다르게 대하는 것은 차별이다.

**2항** 차별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는 장애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등을 잘 생각해야 한다.

그 사람이 장애인일 것 같다는 생각만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6조 차별금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7조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선택:** 여러 개 중에서 필요한 것을 고르는 것  
**결정:**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정하는 것

**1항** 장애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2항** 장애인이 잘 선택하고 결정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조하는(도와주는) 사람이 차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 서울시,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등 내가 살고 있는 ○○시나 ○○도

**2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도와줘야 한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대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것 말고, 또 다른 법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sup>2</sup>으로 정한 것에 따른다.

**장애인 차별금지:** 장애가 있다고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것  
**권리구제:** 다른 사람이 억지로 빼앗은 권리를 다시 찾아 주는 것  
**국가인권위원회법:**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리를 정해놓은 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10조 차별금지



**1항** 사용자는 일할 사람을 뽑거나, 월급을 주거나, 일을 할 때, 또는 일을 그만두게 할 때 그 직원이 장애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

**사용자:** 월급을 주는 사람  
회사 사장, 카페 점장, 식당 주인, 직업재활시설 원장

**2항** 장애인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1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항** 사용자는 장애인 직원이 비장애인 직원과 같이 일할 수 있도록 1호부터 6호까지의 **정당한 편의**를 해줘야 한다.

- 1호.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기 등을 만들거나 고치는 것
- 2호. 장애인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운동이나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바꿔주는 것
- 3호. 일하는데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고, 훈련할 때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받는 것
- 4호. 장애인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설명서나 자료
- 5호. 장애인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 6호.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쓰게 하는 것,



점자



화면해설기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확대독서기



점자정보단말기 (무지점자단말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2조**  
**의학적 검사의 금지**



**낭독자:** 대신 글을 읽어주는 사람  
**수화통역사:** 청각장애인에게 수화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주는 사람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장애인을 보조하는(도와주는) 사람을 붙여주는 것

- 1항** 사용자는 직원을 뽑기 전에 그 사람이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는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직원을 뽑은 다음에, 그 직원이 해야 하는 일에 장애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때에는 검사할 수 있다.
- 2항** 장애가 있는 직원이 병원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돈은 사용자가 낸다. 그리고 돈 내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항** 사용자는 직원의 건강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정보:**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보관하기 위해 글씨나 소리, 영상 등으로 만든 모든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3조**  
차별금지



**1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이 입학하거나, 전학 가는 것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교육책임자:** 학교의 교장 선생님, 유치원의 원장님 등  
**입학:**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들어가는 것  
**전학:**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것

**2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sup>3</sup>를 잘 지켜야 한다.

**3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과 보호자가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4항** 교육책임자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해야 하는 모든 수업 중에서 어떤 수업이나 활동을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수업이나 활동만 하게 해서도 안 된다.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해야 하는 모든 수업’의 예)  
체육수업, 과학수업, 특별활동, 시험 볼 때, 소풍, 수학여행, 체육대회 등



**5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어야 한다.

**6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학생의 공부를 보조하는(도와주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

**장애인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는 사람의 예)** 선생님, 통합교육보조원 등



**무시:** 장애인 학생에게 욕을 하거나 때리는 것  
장애인 학생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것

**7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이 입학할 때 장애가 있다고 이유 없이 시험을 더 보라고 하면 안 된다.

**8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법으로 약속한 공부시간을 지켜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1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1호부터 6호까지 만들어서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 1호. 교실을 옮겨 다니며 공부를 해야 할 때 필요한 휠체어나 이동보조기 등을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것
- 2호. 장애인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활동보조인, 특수교육보조원)이 도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
- 3호. 장애인 학생의 공부를 도와 줄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을 빌려주고 보조견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4호. 시·청각 장애인이 공부할 때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확대독서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수화통역



문자통역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보청기



점자정보단말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2항** 교육책임자는 장애인 학생을 도와주는 부서와 담당자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부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모인 한 팀.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가족지원센터, 행정부서, 총무부서, 생산부서 등

담당자: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하는 사람

**3항** 장애인 학생이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든 부서가 하는 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호. 장애인 학생이 어떤 방법으로 배우는 것이 좋을지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

6호. 그 밖에 장애인이 공부할 때 손해가 없도록 필요한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항**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다르게  
대하면 안 된다.

\*차별인 경우: 식당 주인이 손님이 장애인이라고  
음식을 팔지 않겠다고 할 때

\*차별이 아닌 경우: 식당에 온 장애인이 음식을  
시켜놓고 돈은 없다고 해서  
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할 때

재화: 물건  
용역: 사람이 하는 일, 서비스

**2항** 물건을 사고팔거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뺏으면 안 된다.

예) 발달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상해보험(사고를  
당해서 다쳤을 때 치료에 필요한 돈을 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을 들지 못하게 하는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16조 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땅이나 건물의 주인은 장애인이 땅과 건물을  
사고팔거나, 빌리거나, 건물에 들어 와서  
사용하는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17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은행이나 보험회사 직원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18조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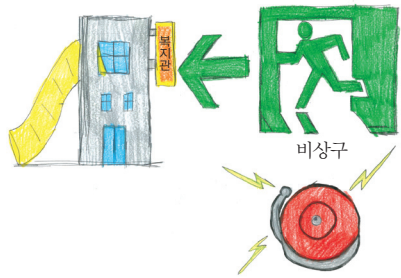
**1항** 시설물의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필요한 일을 볼 때, 위험해서 피해야 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된다.

시설물: 영화관, 박물관, 마트, 식당, 아파트, 집, 빌딩 등

**2항** 시설물의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장애인과 장애인의 보조견, 보조기구를 차별하면 안 된다.

**3항** 시설물의 주인이나 관리하는 사람은 건물이 갑자기 위험해져서 장애인이 밖으로 나와야 할 때,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4항** 3항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19조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1항** 교통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버스, 지하철, 비행기, 기차, 배 등을 탈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통사업자: 버스, 지하철, 비행기, 기차, 택시 회사의 사장  
교통행정기관: 교통사업자가 사업을 잘 하고 있는지 살피는 기관

**2항**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버스, 기차, 지하철 등에 보조견과 함께 타지 못하거나 보조기구를 쓰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3항**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자(도와주는 사람)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조견이나 보조기구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더 비싸게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교통수단: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등

**4항**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다니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5항**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알리고, 가르치고, 잘 살펴봐야 한다.

**6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운전면허시험: 자동차를 운전할 때 필요한 자격증

**7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여야 한다.  
예) 운전면허시험을 볼 때 다리를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은 손으로만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시험을 보도록 해야 한다.

**8항** 제4항과 제7항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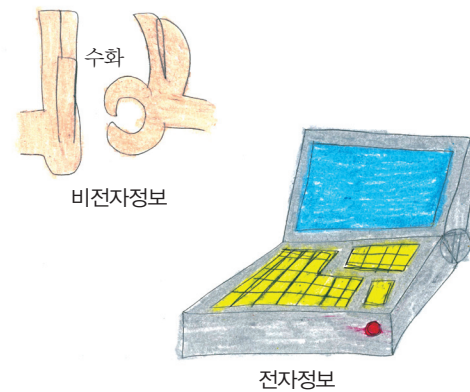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0조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1항** 장애인이 정보를 찾고 이용할 때 장애가 있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2항**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주는 방법'의 예)

- 시각장애인: 점역(글자를 점자로 바꾸는 것), 낭독(대신 읽어주는 것), 대필(대신 글자를 써주는 것), 안내(옆에서 직접 알려주는 것)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다른 사람의 말을 수화로 전해주는 것), 대필
- 발달장애인: 발달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주거나 대필, 안내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21조 정보통신·의사소통 이용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1항**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공공기관이나 사업주는 장애인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항** 공공기관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서 장애인이 그 행사를 잘 알 수 있고 말을 잘 할 수 있게 수화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보청기기 등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정보:** 사람들에게 알리거나 보관하기 위해 글씨나 소리, 영상 등으로 만든 모든 것(3조 8항)

**문자통역사:** 말하는 내용을 컴퓨터로 쳐서 청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

**수화통역사:** 청각장애인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수화로 전해주는 사람

**음성통역사:** 말하는 것이 어렵거나, 수화를 쓰는 사람의 생각을 말로 전해주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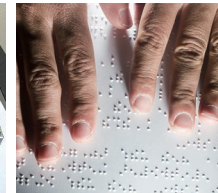
**3항** 방송이나 인터넷 방송 사업주는 장애인이 방송을 편하게 볼 수 있게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해야 한다.

**폐쇄자막:**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볼 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도록 글로 써서 자막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데 폐쇄자막은 걸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기계로 읽어야 한다.

**화면해설:** 텔레비전이나 영화 등을 볼 때 나오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



화면해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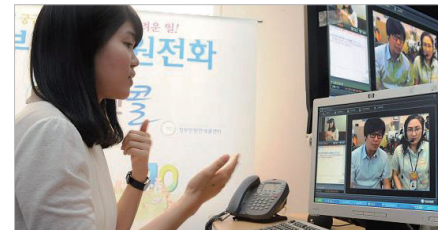
점자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확대독서기



영상통화

**4항** 전화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는 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영상통화,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항** 아래 1호부터 2호까지의 사람들은 장애인이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해야 한다. 그리고 도서관에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을 준비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호. 책을 만들어 파는 사람

2호. 영화, 비디오 등 동영상을 만드는 사람과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

**6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



**1항**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장애인 자신의 허락을 받아서 모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거나, 가져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개인정보:** 살아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3조 8항)

**개인정보의 예**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그리고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2항** 제1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 법 「개인정보 보호법」<sup>4</s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sup>5</sup> 등이 정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지킨다.

**3항** 장애인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도 되는지를 물었을 때, 대답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법으로 정해 놓은 대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으로 정해 놓은 대리인의 예** 어머니, 아버지, 후견인 등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3조 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를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도구를 만들고 나눠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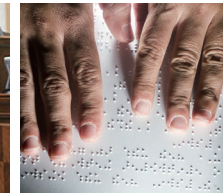
**2항**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드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예** 전화, 인터넷 회사, 정보통신 제품, 전화, 핸드폰, 컴퓨터 등

**3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등을 잘 살펴보고, 그 장애인에게 맞는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억지로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화통역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 제24조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1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하기 싫은 문화·예술활동을 억지로  
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문화·예술사업자의 예** 영화감독, 피디(PD),  
연예기획사의 사장 등



**문화·예술활동**: 책을 쓰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춤을 추는 것,  
연극이나 영화를 보는 것, 사진을 찍는 것,  
연예활동을 하는 것 등 (3조 10항)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동:**

제4조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차별'은  
1호부터 6호까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1호.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못하게 막거나,  
따돌리거나,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 것.  
2호. 장애인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는 차별하는 것  
4호. 장애인을 잘못 알려주거나 나쁘게 알려주는  
광고를 만드는 것

**2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3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일을  
정하고 진정으로 노력해야 한다.

**4항** 제2항인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사업자가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활동의 예



그림그리기



방송/영화



음악연주



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25조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1항**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려고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등 몸으로 하는 활동(3조 12항)  
달리기, 줄넘기, 농구, 야구, 태권도, 축구, 배드민턴, 수영 등



제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  
배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따돌리는 것  
분리: 장애인만 따로 모이게 하거나, 장애인끼리만 살게 하는 것  
거부: 장애인에게 필요한 도움이나 장애인의 생각을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것

**2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여자, 남자인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잘 살펴보고,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때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한다.



**3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짜로 노력해야 한다.

**4항** 제2항을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1항** 공공기관과 그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애가 있다고 차별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 필요한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주고 서비스해야 한다.

**4항**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항**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달라고 할 때, 무시하거나 마음대로 해서 장애인에게 손해를 주면 안 된다.



**6항** 경찰서나 법원은 장애인이 말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는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 장애인이 도와줄 사람을 불러달라고 할 때, 경찰이나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싫다고 하면 안 된다.

**7항** 장애인이 죄를 지어 감옥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지낼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 편의시설의 예

지체장애인에게 필요한 휠체어, 이동식 경사로, 엘리베이터,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흰 지팡이, 점자,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청기 등

**8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잘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7조  
참정권

**1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투표를 하거나, 선거후보자로 나갈 때  
무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해결해 달라고  
글로 써서 낸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



**공직선거후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을 하고  
싶어서 선거에 나온 사람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참고**

**청원권:** 국민이 원하는 것을 글로 써서 나라에 내고  
부탁할 수 있는 권리

-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  
예) 장애인이라고 놀리고 심하게 맞아서  
직장에 갈 수가 없게 되었을 때
-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법을  
고치거나 벌을 주라고 하는 것
- 법률·명령·규칙을 만들거나 고치거나  
없애달라는 하는 것
- 국민을 위해 제도나 시설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예) 동네에 장애인복지관이나 그룹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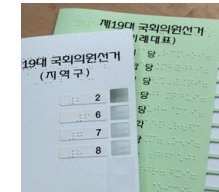
**2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투표를 하거나, 선거후보자로 나갈 때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한 장애인이  
우리나라에 해결해 달라고 문서로  
요청할 때 다음과 같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



**선거후보자:** 대통령, 국회의원, 시의원, 교육감 등을 하고 싶어서  
선거에 나온 사람  
**요청:**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

**장애인이 선거를 하기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예)**

- 시각장애인:** 점자투표용지, 음성통역 등
-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보청기 등
- 지체장애인:** 장애인기표소,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 발달장애인:** 그림안내서, 선거에 나온 사람에  
대한 쉬운 설명, 투표 및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 등



점자 투표용지



장애인기표소



경사로

엘리베이터

**3항** 선거후보자와 정당은 장애인이 투표를  
잘 할 수 있도록 선거 정보를 알기 쉽게  
만들어줘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8조**  
**모·부성권의 차별금지**

**1항**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를 갖고, 낳고, 키우고, 가르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2항** 입양기관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입양을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

**입양:** 부모가 없는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서 자식으로 키우면서 같이 사는 것

**입양기관:** 아이가 없는 부부와 부모가 없는 아이를 가족으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곳

**3항**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차별하면 안 된다.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아동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예’  
원장, 교사(선생님)

**4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아기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고, 가르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해줘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보조기구나 도구를 만들어서 도와줄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에 필요한 도움의 예**

- 성에 대해 솔직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교육과 상담 (성생활, 피임도구 사용법)
- 장애인 예비부부학교, 예비부모학교
- 아이를 가졌을 때, 낳을 때, 기를 때 방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 등



**임신:** 아이를 가짐  
**출산:** 아이를 낳음  
**양육:**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는 것  
**피임:** 아이를 갖지 않음

**5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를 할 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차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잘 살펴봐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9조 성에서의 차별금지



**1항** 모든 장애인에게는 자기의 성을 표현하고, 성을 즐길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자기결정권:**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성적자기결정권:** 다른 사람이 내 손을 잡거나 키스를 하려할 때 '싫다', '좋다'를 자신이 결정하는 것, 연애나 결혼을 할 권리



**2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사람들은 장애인이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필요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족:** 법으로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나 함께 사는 사람들  
**가정:** 가족이 생활하는 집 (제3조 13항)  
**복지시설:** 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관, 보호작업장, 그룹홈, 생활시설 등 (제3조 14항)



**3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즐길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0조 가족·가정·복지시설등에서의 차별금지



**1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에게 억지로 일을 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장애인을 빼 놓고 결정하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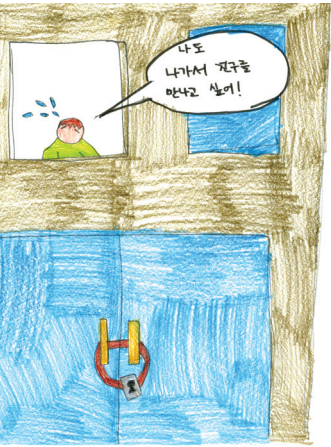
**결정:** 행동이나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

**2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의 허락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3항**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에 있는 사람들은 장애인이 공부를 하거나, 돈을 모으거나, 활동을 하거나, 원하는 곳을 가거나, 살고 싶은 곳에서 살려고 할 때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

**4항** 가족이나 친척들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막으면 안 된다.





**5항** 복지시설의 원장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살아야 할 때, 부모에게 부모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가족을 만나지 못하게 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각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을 적은 종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1조 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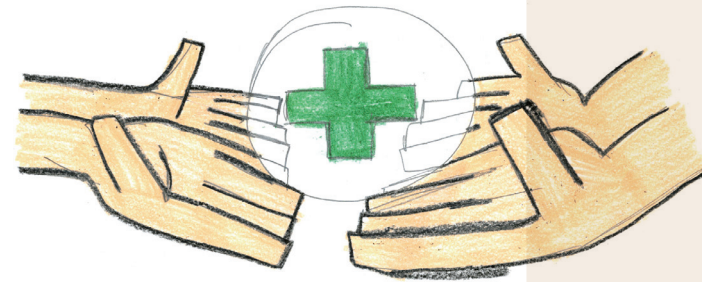
**1항**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병을 고칠 때 장애가 있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의료기관의 예) 병원, 보건소, 약국, 한의원 등  
의료인의 예) 의사, 간호사, 약사 등

**2항**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병을 고칠 때 장애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등을 잘 생각하여 치료해야 한다.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알려줘야 한다.

**3항** 공공기관은 장애인에게 건강에 대해 가르칠 때, 장애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알려줘야 한다.

**4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는 방법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건강을 잘 지키는데 알아야 하는 방법을 만들 때 장애인이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



괴롭힘

**1항** 장애인은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폭력의 예** 욕하는 것, 때리는 것, 따돌리는 것, 무시하는 것, 성폭력하는 것

**2항** 괴롭힘을 당한 장애인은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못살게 하거나 무섭게 대해서 손해를 주면 안 된다.

**도움의 예** 상담, 병원 치료, 변호사 도움 등

**3항** 누구든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자(장애인을 돕는 사람)를 따돌리거나, 무시하거나, 욕을 하면 안 된다.

**4항** 누구든지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자(장애인을 돕는 사람)를 길에 버리거나, 내쫓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돈을 빼앗거나, 일한만큼 월급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5항** 누구든지 장애인의 몸을 보고 기분 나쁜 말을 해서 창피를 주거나, 성폭력을 하면 안 된다.

**6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괴롭히지 않도록 가르치고 방법을 찾아 진짜로 해야 한다.





##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1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있는 여성을 차별하면 안 된다.

**2항** 장애가 있는 여성이 아기를 갖거나, 키우거나, 집안일을 할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못하게 하면 안 된다.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예**

- 하고 싶은 집안일을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것
-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수술을 시키는 것
- 아기를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것
- 아기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것 등

**3항** 사장은 장애가 있는 여성도 다른 사람과 같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엄마가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1호부터 3호까지의 준비를 해야 한다.

1호. 직장에서는 장애여성이 아기에게 편하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장: 일을 하는 곳, 회사

2호. 직장에서는 장애여성이 아기가 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호. 직장에서는 장애여성의 아이를 돌보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4항**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책임자는 성폭력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 교육을 할 때 장애가 있는 여성에 대해 잘 설명해야 한다.



교육기관: 학교, 복지관 등  
사업장: 보호작업장, 회사 등  
복지시설: 그룹홈, 거주시설 등

**5항** 교육기관과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1호부터 4호의 차별을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해 1호부터 4호의 행동을 했을 때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교육: 배우는 것

- 1호. 무엇인가를 배울 때 장애여성만 따로 배우게 할 때
- 2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것을 배우고 직장을 선택할 때 장애 여성이라는 이유로 못하게 할 때
- 3호. 장애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 계획을 짜거나 이 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지 않을 때
- 4호. 1호부터 3호까지의 행동 말도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에게 손해를 줄 때

**6항** 제3항을 잘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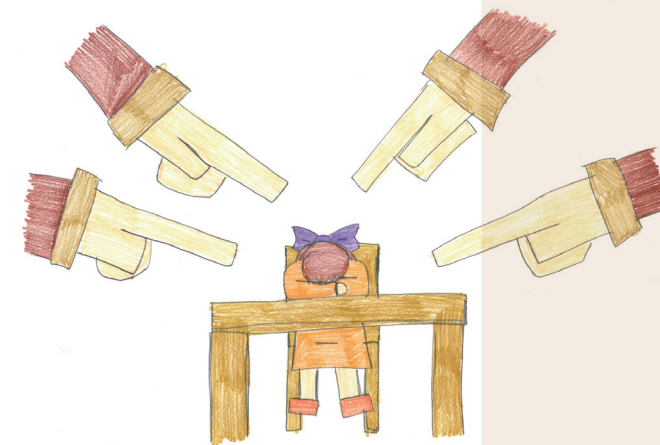
**1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차별을 없애는 방법을 만들어 진짜로 해야 한다.

**2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가 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거나 못하게 하면 안 된다.



**기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참여:** 어떤 사건에 끼어들거나, 일을 같이 하는 것.  
“복지관에서 하는 미술대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1등 상을 받았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5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1항** 장애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2항** 장애 아이가 잘 배우고, 잘 놀고, 건강하고,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기회: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때  
“저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3항** 장애 아이가 우리나라에 정한 법에 따라 나이에 맞게 배울 수는 기회를 빼앗으면 안 된다.

**4항** 장애 아이를 괴롭히면 안 된다. 그리고 장애 아이의 생각을 잘 들어주고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

**장애 아이를 괴롭히는 행동의 예**

- 장애 아이를 내다버리는 것
- 장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것
- 장애 아이의 돈을 억지로 빼앗는 것
- 장애 아이를 때리거나 성폭력 하는 것
- 장애 아이를 놀리거나 욕을 하는 것
- 장애 아이를 억지로 가두는 것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36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의 예**

- 욕을 하는 것
- 무조건 말대꾸하지 말라고 하는 것
- 장애인답게 살라고 하는 것
- 장애가 있다고 생일파티에 초대하지 않는 것
- 시설에서 생일파티 한꺼번에 하는 것
-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시키는 것

**1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이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장애 아이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2항** 우리나라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떤 장애가 있는지, 장애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치료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장애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부모, 선생님)들이 장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37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1항**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장애를 악용하여 손해를 주면 안 된다.

**2항** 우리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맞거나, 성폭력을 당하거나, 억지로 갇히거나, 돈을 빼앗기는 사건을 당하지 않도록 필요한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정신적 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악용:** 나쁘게 이용하려는 것  
**손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밀집, 피해를 받음.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손해가 크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38조 진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을 당한 사람(피해자)과 차별하는 것을 본 사람은 위원회에 진정(신고)할 수 있다.



**진정:** 우리나라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국민이 당한 어려움을 신고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

차별을 당했을 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의 예)  
국가인권위원회: 전화 1331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전화 1577-5364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39조 직권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아주 심각한 차별이 생겼을 때는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도, 바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40조 장애인차별시정 소위원회

**1항**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사건을 조사하고 차별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2항**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가 일을 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을 따로 정한다.



**규칙:**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한 약속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1조  
준용규정

**1항** 장애인 차별 사건을 진정하는 방법과 조사하는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따른다.

**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차별 사건을 신고하거나, 신고자가 없는 차별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를 따른다.

위원회가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결정한 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법무부장관:** 법에 관한 일을 하는 곳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2조  
권고의 통보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3조  
시정명령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을 계속해서 그 피해가 아주 많을 때는 피해자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법무부장관이 차별을 고치라고 직접 명령을 할 수 있다.



**피해:** 몸이나 마음을 다치거나 돈이나 물건 뺏기는 것  
**피해자:** 차별을 당한 사람(38조)

1호. 차별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 생겨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무시할 때

2호.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 차별할 때

3호. 피해자에게 손해를 주려고 일부러 계속 차별할 때



**손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밧집. 피해를 받음.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손해가 크다.”

4호. 1호부터 3호의 차별 말고 또 다른 방법을 계속 차별하여 그 차별을 고칠 필요가 있을 때



**권고:** 어떤 행동이나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부탁이기 때문에 억지로 시키거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때 벌을 줄 수는 없다.

**2항**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을 한 사람(차별 행위자)에게 1호부터 4호까지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1호. 차별을 지금 당장 멈출 것
- 2호. 차별을 받아서 몸이나 마음을 다쳤을 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돈을 낼 것
- 3호. 차별 행위자가 계속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

**3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명령을 자세하게 종이에 써서 피해자와 차별행위자에게 따로따로 줘야 한다.

**4항** 법무부장관이 차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 차별을 당한 사람  
차별 행위자: 차별을 한 사람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4조** 시정명령의 확정



**1항** 법무부장관이 내린 명령이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 명령을 받고 30일이 지나기 전에 재판을 걸 수 있다.

재판: 법원이 법에서 정한 대로 사건을 조사하여 누가 잘못했는지, 얼마만큼 벌을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2항** 제1항의 기간(법무부장관의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동안 행정소송을 내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명령한 대로 된다.

행정소송: 공공기관에서 내린 결정이 화가 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꿔달라고 하는 재판

참고

행정소송의 예

- 아래 ㉠부터 ㉣일 때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 ㉠ 법원에서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적은 편지를 내게 보냈을 때
  - ㉡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을 밝혀달라고 하고 싶을 때
  - ㉢ 내가 돈이 없어서 벌금을 줄여달라고 하고 싶을 때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45조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1항** 법무부장관은 결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 차별 행위자가 법무부장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는지를 적어서 내도록 할 수 있다.



시정명령: 어떤 행동에 잘못을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그 잘못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

**2항** 피해자는 차별 행위자가 차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괴롭히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 차별을 당한 사람  
차별 행위자: 차별을 한 사람

장애인  
차별  
금지법

## 제46조 손해배상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겨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에게 그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그러나 일부러 차별을 한 것이 아니거나, 실수였음을 차별 행위자가 증명하면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



증명: 어떤 사건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조사해서 밝히는 것

**2항**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어기고 차별을 해서 손해가 생겼지만,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잘 설명할 수 없을 때는 차별 행위자가 차별로 얻은 재산만큼 피해자가 손해를 본 것으로 정한다.

**3항** 법원은 차별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얼마큼 손해를 봤는지 정할 수 있다.



손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밀집. 피해를 받음.  
“돈이 많이 들어 있는 지갑을 잃어버려서 손해가 크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7조**  
**입증책임의 배분**

- 1항** 차별 당한 사건을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차별을 당했는지를 자기가 밝혀야 한다.
- 2항** 장애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어서 억울하다면, 아니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8조**  
**법원의 구제조치**

-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는 차별을 했을 때, 법원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차별 사건에 필요한 명령의 예)**
    - 법원이 차별을 한 사람에게 차별을 멈추라는 명령서를 보냄.
    - 법원이 차별을 당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있게 해 줌.
- 2항** 차별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법원은 차별하지 말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돈으로 물어내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이 때는 민사집행법 제261조<sup>6</sup>를 따른다.



**법원:** 누가 잘못했는지를 법으로 밝혀내고 재판을 하는 곳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49조**  
**차별행위**

- 1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차별을 하고, 그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드러났을 때, 법원은 차별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을 내라고 명령할 수 있다. 감옥에 가장 오래 가두는 시간은 3년이고, 벌금으로 가장 많이 내는 돈은 3천만까지로 정해져있다.



**벌금:** 법이나 규칙을 어겼을 때 벌을 주기 위해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돈

- 2항** 제1항에서 나오는 ‘악의적’이라고 결정할 때 는 1호부터 3호까지 전부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
  - 1호. 차별인 줄 알면서도 할 때
  - 2호. 차별을 멈추지 추지 않고 계속할 때
  - 3호.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속 괴롭힐 때
  - 4호. 차별을 심하게 할 때







**3항** 법인의 대표자나 일하는 사람이 장애인을 차별할 때는 벌을 주고 벌금을 내도록 한다. 그러나 법인의 대표자가 장애인 차별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자주 교육을 시키고, 잘 살펴봤다면 벌주지는 않는다.

**법인대표자의 예:** 시·도·군·자치구의 공무원, 복지관의 원장이나 이사장, 학교의 교장이나 이사장, 회사의 사장 등

**4항**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지 않은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1항** 법무부장관이 내린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듣지 않는 사람(차별 행위자)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 때 가장 많이 내는 돈은 3천만 원까지로 정해져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벌금은 법무부장관이 명령하고 받는다.

**<부칙>**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작한다.



**3조 2항**  
장애인 보조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3조 3항**  
휠체어: 재활공학연구소 홈페이지 (주) 대세엠케이  
보청기: www.hurjunent.co.kr  
장애인 자동차: www.avingnews.com

**3조 8항**  
전자정보의 예  
마우스: 월간 저작권문화 2005. 11호  
핸드폰: www.jeonjuits.go.kr  
비전자정보의 예  
픽토그램: www.designerjob.co.kr  
개인정보의 예  
복지카드: www.newsis.com  
주민등록증: www.weeklytoday.com

**3조 10항**  
방송 영화: MBC 김민식FD 블로그  
음악연주: 하트하트재단  
춤: 안영희의 장고춤

**3조 15항**  
아파트: 서울특별시 에스에이치공사

**3조 20항**  
SBS, 중앙포토

**11조**  
화면해설기: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 (주)엑스비전테크놀로지 센스리더  
프루페셔널  
점자정보단말기: 한국시각장애인편의증진센터  
확대독서기: www.ohmynews.com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news.inews24.com/보이스아이

**14조**  
높낮이조절책상: www.levenger.com/  
Sit-to-Stand-Rolling-Workstation-12477  
보안대체의사소통도구: www.ablenews.co.kr  
수화통역: 전주 뉴시스  
문자통역: 에이유디사회적협동조합  
점자음성변환용코드: www.etnews.com

**19조 7항**  
장애인 자동차: www.avingnews.com

**21조 4항**  
영상통화: www.110.go.kr(정부민원안내콜센터)

**27조 3항**  
장애인 기표소1: www.newsis.com  
장애인 기표소2: www.ablenews.co.kr  
점자투표용지: www.welfarenews.net

그 외 www.shutterstock.com

# 우리 모두 소중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짧게 줄인 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 2. “보조권”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권을 말한다.
-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하는 자를 말한다.
-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수화,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

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

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 ①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 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절 교육

#### 제13조(차별금지)

- ①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등에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

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 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①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조건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조건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수화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 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

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정보보호)**

-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수화,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① 체육활동을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

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

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참정권)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

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도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자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

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 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 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 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 ①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 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 ①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① 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 제46조(손해배상)

- ①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 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6장 벌칙

### 제49조(차별행위)

- ①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50조(과태료)

- ①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온 다른 법

### 장차법 3조 1항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2항, 3항, 14항

#### 장애인복지법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3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 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2009년도 5월 22일 폐지)

이 법은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노령자·여성 등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5항

#### 근로기준법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6항 / 13조 1항

#### 영유아보육법

이 법은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유아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초·중등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평생교육법

이 법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

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學習課程)을 마친 자들에게 학점인정을 통하여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의 기회를 줌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8항 / 3조 9항

#### 국가정보화 기본법(각주 1)

이 법은 국가정보화의 기본 방향과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8항 / 22조 2항

#### 개인정보 보호법(각주 4)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0항

#### 문화예술진흥법

이 법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2항

#### 국민체육진흥법

이 법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량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3항

#### 건강가정기본법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4항

####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온 다른 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5항

####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6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3조 18항~19항

####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장차법 9조 / 41조 1~2항 / 42~43조 / 49조 4항

#### 국가인권위원회법(각주 2)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10조

#### 노동관계 및 노동조합조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13조 2항, 8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각주 3)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19조 1항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21조 3항

#### 방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어 가는 환경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등을 이용한 방송사업의 운영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21조 4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중계서비스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고시내용’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과 운영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21조 5항

#### 도서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22조 2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각주 5)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28조 2항

#### 아동복지법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장차법 48조

#### 민사집행법(각주 6)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알기 쉬운 장애인차별금지법 우리 모두 소중해!

발행일 2015년 12월 10일

발행인 김명실

편집인 김명실 최희정

제작위원 구재희 김경훈 김혜경 박경인 이원무 장민원 최희정 황지원

발행처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주소 (우)03502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256 3층

전화 02-742-0142 팩스 02-742-0144

홈페이지 <http://genapride.org>

디자인 디자인명작 02-774-7538

※ 이 책에 나온 글과 그림은 (사)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